

#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

기획조정실 경영전략부

2024. 06. 24. 제정 지침 제428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의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소관 사무에 관하여 심의·의결·조정·자문의 목적으로 설치되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이 운영 또는 관리하는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구를 말한다.
- “운영부서”란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 “운영총괄부서”란 다수의 부서가 동일한 위원회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의미한다.
- “관리부서”란 심사평가원의 각종 위원회 현황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심사평가원이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위원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단순협의체: 위원 간 정보 전달에 한정되거나, 합의(合意) 없이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으로 한정된 회의체
- 일회성 회의체: 협의 또는 자문 목적으로 위원을 구성하여 1년 이내로 운영이

## 제2장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부서의 장은 운영 중인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부서의 장은 운영 중인 위원회와 기능·성격상의 중복 여부를 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중복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③ 운영부서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되, 필요시 분과위원회 등(이하 “하부위원회”라 한다)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부서의 장은 관리시스템에 위원회 설치 목적, 기능·성격 등을 등록하고 설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위원회 설치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위원회 설치에 대한 승인 또는 반려를 진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 승인을 득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규정 등에 명시해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회의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
5. 위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
6. 위원장의 선출방법, 권한 및 직무대행
7. 하부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심의 또는 의결 등의 기한, 이의신청 절차 등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 설치 등은 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부득이한 사유로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회 설치 요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 후 문서 시행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규모의 내부 위원 또는 외부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며,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② 운영부서의 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위해 성별·지역별·세대별 위원이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운영부서의 장은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추천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법령·규정 등에 위원의 자격요건(분야별 자격취득 후 실무경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2. 위원을 추천하는 민간단체의 실존여부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고, 민간단체가 추천 위원을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 추천서에 현 소속 및 직위, 학력, 주요 경력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한다.
3.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공개모집 방식이나 전문가풀을 통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운영부서의 장은 외부 위원 위촉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윤리서약서를 받아 위원회 심의·의결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제한)** ① 운영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관리시스템을 통해 다른 위원회의 중복 위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운영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위원회 심의사항이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한정적인 경우
2. 특정 직위에 따라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운영부서의 장이 중복 또는 연임 위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원 연임 또는 중복 위촉 점검 양식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와 미리 협의한다)

### 제3장 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부서의 장은 사전에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회의 안건 공개 시 공정한 위원회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은 중요 사안에 대해서 위원에게 사전검토의견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 개최 전까지 사전검토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 현황관리)** ① 운영부서의 장은 위원회 설치가 승인된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 구성 등 설치 현황을 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 운영부서의 장은 운영하는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반기 또는 연단위로 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고, 각 위원회 운영총괄부서의 장은 등록된 정보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1. 위원회 설치현황
2.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및 위원 현황
3. 기타 관리부서에서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요청한 사항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전사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을 확인·점검해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정비)** ① 운영총괄부서의 장은 운영을 총괄하는 위원회를 연 단위로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정비의견이 있는 경우 관리부서에 제출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와 운영총괄부서의 정비의견을 토대로 심사평가원의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영총괄부서의 장 또는 운영부서의 장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부 칙 <지침 제428호, 2024.6.24.>

이 지침은 2024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위원회 설치 요청서

<b>위원회 명칭</b>				<b>분류</b>	( ) 본위원회 ( ) 하부위원회	
<b>목적 및 기능</b>				<b>성격</b>	( ) 의결 ( ) 자문	
				<b>설치일자</b>	- -	
				<b>존속기한</b>	- -	
<b>운영 총괄부서</b>	<b>실 부</b>			<b>총괄 담당자</b>	<b>팀장</b>	
					<b>직원</b>	
<b>운영부서</b>	<b>실 부</b>			<b>운영 담당자</b>	<b>팀장</b>	
					<b>직원</b>	
<b>근거 규정</b>	<b>외부</b>	<i>000법 제00조( )</i>		<b>내부</b>		
<b>규정상 내용</b>						
<b>위원장</b>	<b>유형</b>	( )당연직 ( )위촉직 ( )임명직 ( )지명직 ( )호선 ( )기타			<b>임기</b>	( )년
					<b>연임규정</b>	( ) Y ( ) N
	<b>직위</b>				<b>위원수</b>	
					<b>인력풀여부</b>	
					<b>회의당위원수</b>	
<b>비고</b>						

## 000위원회 위원 추천서

### 추천 대상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근무처		직위	
학력			
소속단체	학회, 협회, 시민단체		
주요경력 (연월기재)	1. 00기관 00과장('00년 00월~'00년 00월) 2. 3.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추천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00법」 제00조에 따라 제0기 000위원회 위원을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단체명:    ○ ○ ○ (직인)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허가·면허·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	아니오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용역·계약 또는 연구·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관, 단체,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확 인 자    ○ ○ ○ (서명)

- ♣ 위원 후보자 본인의 해당 항목을 표시하되, 고도의 직무윤리가 요구되는 위원회는 후보자 가족의 해당 항목까지 범위 확대

## 윤리서약서

직위 : ○○○○위원회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에서의 공정 및 정치적 중립성 준수
2.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3.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6.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7.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8.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9.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20      년      월      일

○ ○ ○ (서명)

## 연임 또는 중복 위촉 여부 점검 양식

연번	점검 방법												
<b>1. 해당자</b>													
○ 성명 : 김 **													
○ 자격 요건 : △△단체·협회의 추천, 전문가(변호사 등)													
<b>2. 해당자가 연임 또는 중복 위촉된 위원회</b>													
<table border="1"><thead><tr><th>연번</th><th>위원회 명</th><th>임기</th></tr></thead><tbody><tr><td></td><td></td><td>0000.00.00.~ 0000.00.00.</td></tr><tr><td></td><td></td><td>0000.00.00.~ 0000.00.00.</td></tr><tr><td></td><td></td><td>0000.00.00.~ 0000.00.00.</td></tr></tbody></table>		연번	위원회 명	임기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연번	위원회 명	임기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 연임·중복되었음에도 위촉이 필요하면 '문 3'을 작성													
<b>3. 연임 또는 중복 위촉 시 그 사유</b>													
○													
○													
○													
○													